



# 산업안전법령 및 정책방향



## 순서

- I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 I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무
- III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IV 유해·위험 예방 조치
- V 근로자의 보건관리
- VI 산업안전 주요 정책방향

##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Loss)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산업안전보건법



# I.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확립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산업안전·보건  
책임 소재 명확화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 ▶ 노무를 제공하는 자(보호대상 확대)

-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건설기계 운전원(굴착기 등 27종), 택배원, 대리운전,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시멘트, 철강 등), 골프장 캐디 등 <전속성 요건: 하나의 사업에 노무 상시적 제공>
- ③ 배달종사자(이동통신단말장치로 중개를 받아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개인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주(법인,기관) 및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b>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b> )	근로자, 노무제공자, <b>수급인</b> ,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b>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중대산업재해 예방</b> )
적용범위	<b>전 사업장 적용</b>	<b>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b> (5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공사 24.1.27.시행)
재해정의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 <b>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열사병 등 24 질병)</b> <b>온열질환 산업재해 3건이상 (중처법 적용 대상)</b>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 위험기계, 위험물질 사용 및 굴착·발파 등 위험작업 시 안전 및 보건조치 -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b>안전·보건 확보 의무</b>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관계 법령에 따른 기관의 시정명령 사항 이행 -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수준 (양벌규정)	[개인] <b>사망</b> ▶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b>조치위반</b> ▶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b>사망</b> ▶ 10억원 이하 벌금 <b>조치위반</b> ▶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 <b>사망</b> ▶ 1년 이상 징역 or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b>부상 질병</b> ▶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b>사망</b> ▶ 50억원 이하 벌금 <b>부상 질병</b> ▶ 10억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 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무

CHECK LIST





# 1.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기록 및 보고

## 산업재해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보고 누락 발생, 요양기간 3월이후 발생)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 ☞ **은폐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단순히 보고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위조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응을 하는 행정관청의 업무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교사, 공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재해 발생의 보고

-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발생개요·원인,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미보고시 과태료 1차 700만원)
- ☞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미보고시 과태료 3,000만원)

#### 산업재해의 기록·보존

- ☞ 기록할 내용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보존기간: 3년간**

-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반영 감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 원하청 합산

# 4. 안전표지 부착 등의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부착 해야 함 (법 제37조)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금지, 경고, 지시**  
↳ **안전모 착용 지시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금연 금지표지 등**
- 비상시 조치 안내 등

☞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 부착하여야 함.**
- **위반시 처분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보건표지를 미설치, 미부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인간의 잘못(실수, 착오)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오류의 가능성이나 부정적 결과는 **인력선정, 훈련(교육), 환경설계(안전시설 개선, 경고표지 부착)**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다.”

『 인간실수 확률 예측기법 자료 휴먼에러 대책 중 』



산업안전보건법



##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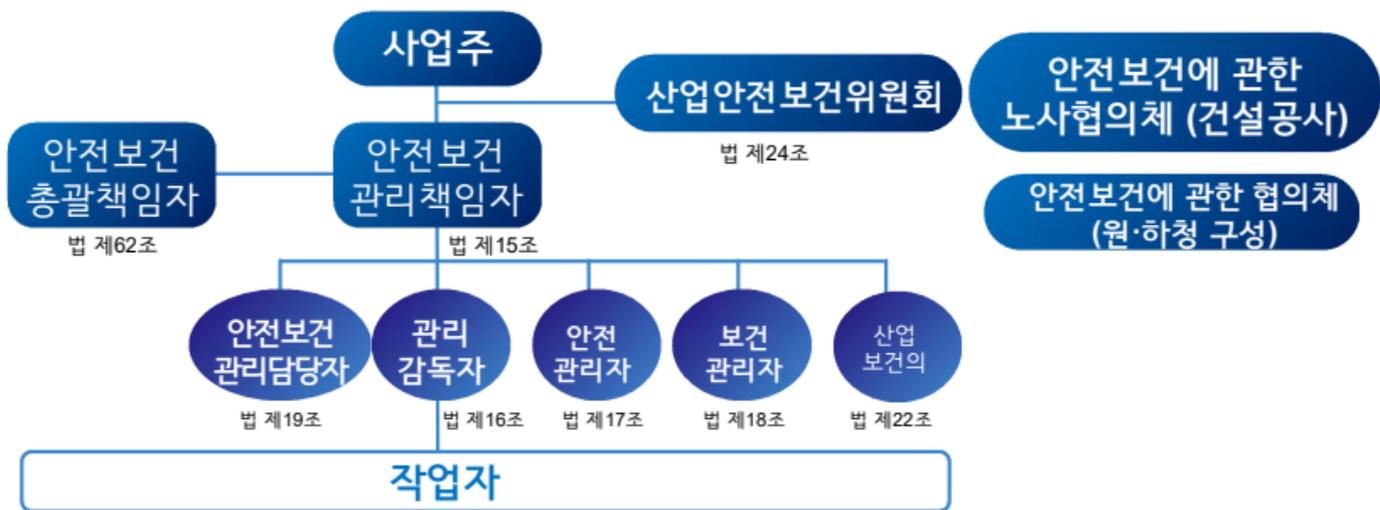
CHECK LIST



• 1.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

-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안전·보건관리자가 보좌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 2.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사업장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토사석 광업, 일부 제조업 등은 50명 이상)
- 또는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자격

-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 (개인사업주, 대표이사)
- **별도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

업무

- ① **안전보건 총괄관리**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 ③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

## 2.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

#### 대상 사업장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자격

-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

#### 업무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 (매월 1회 이상 회의)**
  -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업: 2일에 1회 이상)**
  - 도급인·관계수급인·원하청 소속 근로자 각 1명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 (2월에 1회 이상)**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끼임·충돌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IV. 유해·위험 예방 조치

CHECK LIST





# 1. 유해·위험 예방조치

##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위험원인, 작업방법, 작업장소**로 구분  
 각각의 상세한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함

###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 •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협착, 말림	공작기계, 엘리베이터
배임, 창상	공작기계, 식품기계
낙하, 비레	금속공작기계, 크레인
전도, 추락	고소작업 하역운반기계 등
파열, 파단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도괴	항타기, 비계 등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조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 작업 중 추락, 붕괴, 낙하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고 유형	위험한 작업장소의 예
추락	작업발판의 끝 부분, 지붕, 작업바닥, 개구부, 사다리
전도	작업바닥, 통로
붕괴 비레	재료적치장소, 토사채취현장, 갯길
충돌	하역현장, 도로

## 위반시 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68조) < 감독 등 위반시 >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167조) < 중대재해 발생시 >



# 1. 유해·위험 예방조치

## 보건조치

-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장해

무더운 여름

☛ **열사병**: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물·그늘·휴식 제공, 휴게시설 설치 등 조치 (중처법 사업체단위 적용)

☛ **산소결핍 질식사고**: 맨홀 작업 또는 맨홀내 배수관로 확인작업 등, 산소농도 18~23.5% 유지 확인

## 위반시 조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68조)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167조)



# 1. 유해·위험 예방조치

## 작업중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 재개 (법 제51조)

### 작업중지 후 조치

- 근로자는 지체 없이 상급자에 보고,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 시행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발생원인 조사, 안전·보건진단 등 조치
-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됨

### 작업중지 및 대피에 대한 개별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제279조(대피 등) 제1항,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제2호,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제1항,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제1항,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제1항, 제624조(사고시의 대피)제1항

### 위반시 조치

- 작업 중지 및 대피조치 않은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68조)
-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및 원인조사 행위 방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56조제3항)



## • 23년 여름철 태풍·호우시 사업장 안전관리

- ◆ 장마철·폭염 등에 의한 **붕괴·침수·질식·감전·열사병·화재·폭발** 사고 위험요인 자율점검
-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안전보건규칙 제37조)
  -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그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 태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현황**: '20년 태풍 마이삭(3대), '11년 공파스(4대) 등
- 작업의 제한(안전보건규칙 제383조)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①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 ②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 ③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23년 여름철 태풍·호우시 사업장 안전관리

## ◆ 장마철·폭염 등에 의한 붕괴·침수·질식·감전·열사병·화재·폭발사고 예방조치 철저

### 장마철 주요 재해발생

- ( **붕괴** ) 절·성토면 내 지표면을 통한 우수의 지속적 유입에 따른 비탈면 붕괴  
 ☞ 경사면 붕괴 위험시 **흙막이지보공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등 조치
- ( **붕괴** ) 굴착면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사유실로 인한 흙막이지보공 붕괴  
 ☞ 흙막이지보공 상태점검 및 계측관리, 이상변위 발생시 작업중지후 보강조치
- ( **침수** ) 복개구조물 및 지하구조물 공사 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 집중호우 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조치 또는 대피기준 마련 및 준수 등
- ( **감전** ) 전기기계·기구 등 사용 시 충전부 접촉 및 누전에 의한 감전  
 ⇒ 최근 5년간 건설업 **감전사고** 월평균 5건, **장마철 9건**으로 증가  
 ↳ 잦은 강우와 높은 습기로 인체저항( $\Omega$ )이 낮아 상대적으로 감전사고 위험 높음  
 ☞ **가설전등 충전부 노출,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접지선 탈락** 등



# • 23년 여름철 태풍·호우시 사업장 안전관리

## ◆ 장마철·폭염 등에 의한 붕괴·침수·질식·감전·열사병·화재·폭발사고 예방조치 철저

### 장마철 주요 재해발생

- ( **질식**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또는 밀폐공간 확인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 ⇒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중 맨홀내부로 진입하다 산소결핍,황화수소 중독 등으로 2명 사망
  - ⇒ 지하수 유량계 검침을 위해 맨홀(깊이 3.3M)내에서 확인하던중 산소결핍으로 쓰러져 치료중 사망
  - ☞ 사고 다음날 맨홀내부 산소농도 측정결과 ( 깊이 1m 지점 15.5%, 깊이 3m 지점 6.0% 맨홀내 미생물 호흡 )
  - ☞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기( 강제환기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착용
  - ☞ 작업 전 질식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1644-8595)** 연락시 작업당일(공휴일)도 장비 대여 가능
- ( **열사병** ) 옥외작업자 고열(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건강장해
  - ⇒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등) 산재는 152명(사망 23명 그중 건설업 17명) 발생
  - ☞ 건강장해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등), 격리된 장소의 휴게시설 설치
- ( **화재·폭발** ) 오·폐수처리장 시설 개선 공사 시 가스, 유증기 등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발생
  - ⇒ 슬러지 저류소 배관 용접작업중 폭발 사망
  - ⇒ 하수관로 공사에서 강관 안쪽에 **LPG-산소절단기**로 작업중 폭발, 강관내부에서 구조작업중 동료 2명이 산소결핍 사망 (LPG의 주성분 프로판의 폭발범위 2.1 ~ 9.5%이지만, 여름철 온도증가시 폭발범위는 넓어짐)
  - ☞ 산소·가스농도 측정 및 작업공간 환기 등 안전조치

# • 23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관리

◆ (올해 전망) 최근 폭염시기가 빨라져 **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할 전망**(기상청)

\* 최근 2년('21~'22년)의 **폭염일수(33°C 이상)**는 7월이 8월보다 더 많음

◆ 온열질환 산재는 여름철 기온상황에 비례(특히 더운 7~8월에 많이 발생)

-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비중이 높음 ( 최근 5년 사망자의 73.6%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

- ( 급박한 위험 발생 )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C 이상, 2일 지속)** 이상에서 무더위시간대 (14시~17시)에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 ▲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등 )**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반드시 병원이송**”
  - ( 근로자 작업중지 절차 ) ①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작업 중지** → ②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한 것을 가지고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후끈후끈... 무더운 여름, 바람 솔솔~~

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

물 · 그늘 · 휴식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한 물  
작업장소 주변  
시원한 물 비치

+

시원한 장소  
그늘막 등 쉴 수 있는  
장소 제공

+

휴식시간  
더운 시간대에는  
업무량 조절 및 휴식



긴급한 경우

구조요청



병원으로 후송

하세요.

- ▶ 은열질환자 발생 ▶ 119 구조요청 ▶ 구조대 도착할때까지 응급조치 ▶ 후송
- ▶ 긴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 연락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하여  
은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 2. 도급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안법 개정(20.1.16)」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
-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한편, 「산안법」상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 (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라고 하기 어려움
  - (개인사업자의 중대사고 발생시 산안법상 도급의무 위반 적용제외이나 중처법은 적용대상임)

## 2. 도급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 [1]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 사업주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 부과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도급인 의 무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발파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교육 실시 확인
- 위생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협조
- 같은 장소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

①건설업 ②제조업 ③토사석 광업 ④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⑤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⑥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2일 1회 이상

그 외의 사업

1주 1회 이상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합동 안전·보건 점검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 1회 이상

\*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

## 2. 도급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현장 주요 사고사례 분석, (공사금액, **200억원이상**), 재해 당시 마무리공정 진행중

\* '22년 신축공사현장 천정 스프링클러 배관압력 확인작업중 추락사고



### ○ 경위

배관공이 천정 스프링클러 배관압력 확인을 위해 1단틀비계(1.8M) 위에서 작업중 추락

### ○ 원인(법령 상)

#### ① 이동식비계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런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하기위해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키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조치 필요 (아웃트리거 설치 미흡)

#### ② 안전대 부착 등 추락예방조치 미실시

- 비계의 작업발판은 안전난간 등 설치작업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이며, 주변 배관에 안전대를 걸수 있었으나 안전대를 걸지않고 작업중 사고 발생(안전대 미사용)

☞ (배경) 출입구 단차(경사로 설치 필요)등으로 고소작업대 미사용 추정 및 이전작업팀이 사용했던 이동식비계 조립사용중 사고발생



## 2. 도급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에 따라야 함

### [3] 공사기간 단축 및 설계 변경

- |      |  |
|------|--|
| 공사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b>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됨</b></li> <li>• 천재지변 및 도급책임으로 착공 지연 등 수급인이 공사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공사기간 연장 조치</b></li> </ul>   |
| 설계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설공사발주자</b> 또는 도급인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b>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b></li> <li>•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li> <li>•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을 받은 도급인은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b>설계변경</b>을 요청 가능.</li> <li>• <b>관계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b>할 수 있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함</li> <li>•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b>설계를 변경하여야 함</b></li> </ul> |

⇒ (사례) '21.12월 지장물(한전관로 등) 확인 굴착중(깊이 약1.8m) 굴착면 붕괴로 재해자 하반신이 매몰되어 사망

☞ 안전한 굴착면 경사유지(간지10%) 또는 간이흙막이 시설 설치, 작업장소의 부석등 사전점검, **설계시 붕괴위험깊이 2m 미만 적극 반영**

## 2. 도급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 [5]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 도급인은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대상 기계·기구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조치내용

-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작업자가 법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한 작업수행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상승작업 시 자율점검 및 개선 필요(서울강남지청 홈페이지 게재)**

⇒ 23.1. 5. 부산 타워크레인으로 **인양벽돌** 추락 **중대재해**, 23.1.20. 경기도 **봄대붕괴** 중상해 발생

⇒ 23.4.29 경기 여주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 후속조치로

**텔레스코핑 케이지 조정작업중** 케이지와 함께 추락(30m)하여 **2명 사망** 재해 발생



## 3. 안전·보건교육

###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함(법 제29조)

####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은 법의 일부 적용

#### 교육 방법

-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자체 실시
- 자체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

#### 정기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 종사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3.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

특별교육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3. 안전·보건교육

#### [2]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32조)

교육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신규교육(선임후 3월이내), 보수교육(신규교육후 매2년이 되는 날 전후 3월이내)

교육 방법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을 통해 집합교육이나 인터넷원격교육 병행

직무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0만원

### 3. 안전·보건교육

통계자료상  
산업재해의 직접원인의  
88%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10%....

근로자들의  
불완전한 행동  
감소대책 필요

불완전한 행동(휴먼에러 모형)

- ☞ 착오(Mistake)
- ☞ 실수(Slip)
- ☞ 건망증(Lapse)
- ☞ 위반(Violation)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지급 확인서 1장”

집체, 연장, 인터넷 원격,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 **작업시작 전후 10분 내외 교육**  
( 교육일지 작성, 관리감독자 등  
강사로서 인정받은 사람 실시 )

휴먼에러 대책

- ☞ 설계단계에서 휴먼에러 요소 근원적 제거
- ☞ 안전교육 및 훈련 등 필요



# 4.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 조치

## [1]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자 포함 )  
 ⇒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을 사용할 수 없음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	① 프레스 ② 전단기 및 절곡기 ③ 크레인 ④ 리프트 ⑤ 압력용기 ⑥ 롤러기 ⑦ 사출성형기 ⑧ 고소작업대 ⑨ 곤돌라
방호장치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⑨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안전인증의 표시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나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 마크** 표시



(사례) “작업발판 일체형 갱폼”에 설치된 작업발판이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되어 제조·설치·사용업체 처분조치

## 4.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 조치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2]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을 스스로 확인(자율안전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생산해야 함.

⇒ 누구든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없음

자율확인  
대상

- 의무 안전인증 대상 외 연삭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컨베이어 등 기계와 연삭기 덮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등 방호장치, 보호구 20종 (대통령령)

신고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안전인증(임의인증)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119조)

자율안전  
확인 표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5.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에 신속 대응 (MSDS 대상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음)

⇒(건설) 페인트 및 희석제, 콘크리트 양생 고체연료, 용접작업시 사용하는 LNG 및 아세틸렌 가스 등 MSDS 게시·교육

⇒(제조 등) 공업용 세척제, 메탄올 함유제품 등 화학제품 사용시 MSDS 게시·교육

#### 기재 사항

-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함유량 ②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③ 건강 및 물리적 위험성 ④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정보, 폭발·화재 시의 대처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

#### 경고표시 부 착

- ①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②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시 작성 ③ 경고표시에는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모두 표시

#### 근로자 교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MSDS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유해·위험성이 유사한 MSDS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가능, 교육시간 및 내용 기록·보존

#### MSDS 게시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MSDS를 열람할 수 있는 QR코드나 URL 등을 게시하는 방법 가능, 전산장비 활용 가능)

⇒ (건설공사) MSDS 게시를 MSDS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음

-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유해성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5. 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조치



## ☞ (사고사례,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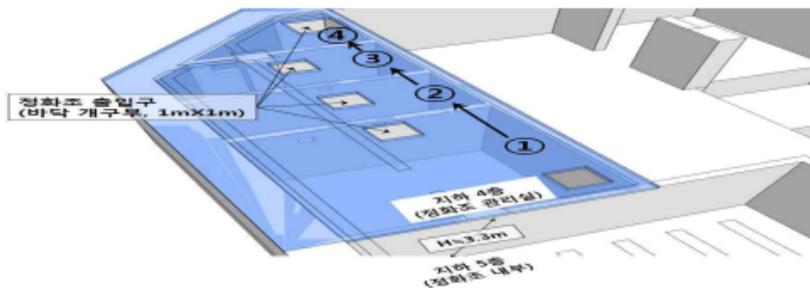
○ 23. 3. 경기도 소재 00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질병자 7명 발생 <중처법 위반 조사대상>

⇒ (개선방안) ① 유해성 주지,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호흡보호구 착용 등으로 중독사고 예방조치

## ☞ (사고사례, 건설현장)

○ 서울 소재 근생시설 건설현장 지하5층정화조 내부에서 작업자(56세)가 **방수공사(콜타르에폭시 방수)** 후 밖으로 나와 이동중  
 인접 정화조 개구부(깊이 3.3m)로 추락하여 중대재해 발생(대형선풍기 2대 및 환기팬 설치, 저농도(0.1%이하) 방독마스크 착용)

☞ (사고 주원인) ① 에폭시 희석제(**톨루엔, 12~74%**), 톨루엔의 중추신경계 억제(현기증 등) ② 방독마스크 필터 **파과** 등  
 ⇒ (개선방안) ① 안전모 착용, 덮개 등 설치 ② 방독마스크 필터 **수시 교체**, 고농도 노출시 송기마스크 착용  
 ③ 충분한 환기를 위한 **급·배기팬과 배기덕트** 설치, 관리대상물질 특별교육 철저



## 6.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토록 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 제시** ('23.5.22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 대상

- 모든 사업장
-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적용

####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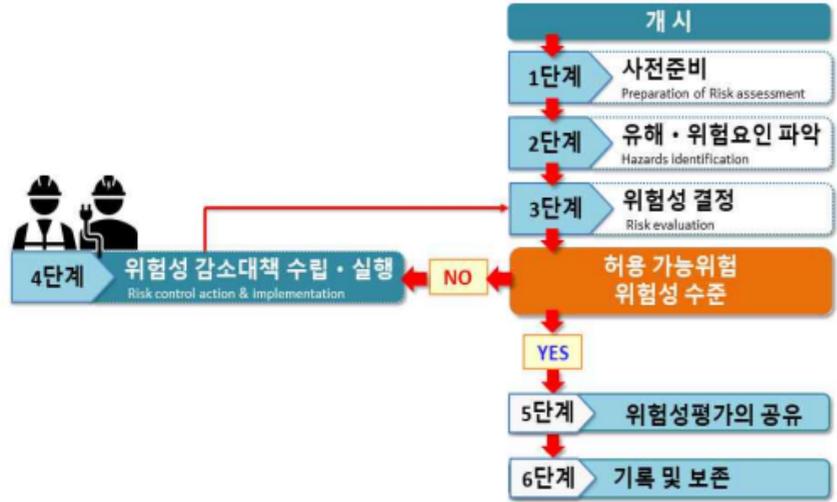
- |      |  |
|------|--|
| 최초평가 |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 (1월이내)              |
|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 실시  |

# 6.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체계

- 위험성 평가 총괄
- 위험성 평가 지도·조언
-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근로자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종사근로자 등 참여 (2~5단계)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자료, 의견청취 등) 위험성 수준의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기술, 교육, 관리 개선)

- 기계·기구, 설비 관련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

## 6.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 상시평가

-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실행
-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도급인 및 수급인 등이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 점검
- **매 작업일마다** 위 활동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TBM을 통해 공유**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작업중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관심**이라는 사실임.

사회전체는 재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작업장내에서의 개인의 인식은 낮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촉진해야 한다고 함

☞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이 필요 (위험성평가)

「**로벤스보고서 인용문**(영국, 1970~1972/법제화 1974),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

( **중대재해 현황 및 사망만인율** )

영국 : '21년 사망자 123명('18년도 0.08‰)

한국 : '21년 사고사망자 828명('18년도 0.51‰)

## 6. 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감축 추진배경

-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
- '21년 사고사망자 828명, 만인율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  
→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

\*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vs 한국 0.43('21.)



-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



산업안전보건법



## V. 근로자의 보건관리

CHECK LIST

- 
- 
- 
- 



# 1. 휴게시설의 설치

(주요내용)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크기·위치) 최소면적은 6㎡(2이상사업장 공동이용시 사업장수 곱한 면적 이상),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는 2.1m 이상

다만,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면적이 최소면적

## 『 휴게시설 위치·온도·비품 등 관리 주요내용 』

(위치)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 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함.(휴게시설 표지 외부에 부착, 담당자 지정)

(온도)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조명(100~200Lux), 환기 가능 등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및 공사금액 50억이상 '22.8.18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 시행

(20명 및 20억원이상, 경비원 등 7개직종 2명이상 사용한 10명이상 사업장 '23.8.18 시행)



정책방향

# Ⅵ.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정책방향





- ① **(관계·유관기관 불시 연계감독)** ‘현장점검의 날’과 ‘긴급순회 점검’, ‘위험성평가 점검’ 등에서 확인된 안전조치·체제·체계 등이 특히 미흡한 사업장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감독** 추진
  - 서울시 중대재해 감시단 통보사업장 및 안전공단 패트를 점검결과 불량사업장, 지자체 통보 사업장, 서울시 및 공단, 지자체 방문시 거부사업장에 대해 불시 연계감독 추진
  
- ②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사고현장 ①72시간이내 **위험성평가 점검** 후, ②**확인감독**과 ③**이행감독**을 추가하여 재발방지 강화(감독: 現1회 → 改2~3회)
  - 공사금액 20억미만, 사업종료 임박 등의 경우 1개월이내 감독 실시
  
- ③ **올해 모든 점검과 감독의 필수 확인항목**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재발방지대책은 올해 모든 점검·감독의 필수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특별관리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 방호장치5, LOTO<sup>6</sup>(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sup>7</sup>, 충돌방지장치<sup>8</sup>



## □ 주요 건설업체 사망사고 재발방지 감독

○ (대상) 시공능력평가순위 1~1,000위 종합건설업체(토건)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업체 전국 시공현장 감독

- ① 첫번째사망사고 : 시공현장의 **25%** 내외감독(2일 이상)
- ② 두번째사망사고 : 시공현장의 **25%** 내외감독(2일 이상) 및 **본사 감독**
- ③ 세번째사망사고 : 전국 현장의 **25%** 내외감독(3일 이상) 및 감독결과 **보도자료 배포**
- ④ 네번째사망사고 : 별도 지침에 따라 실시

## □ 공사금액 50억이상 현장감독(전국기준: 3,000개소)

○ (감독 대상)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관서별 선정

- ① '22년 사망사고 **2명 이상** 발생 건설사 시공 현장
- ② 자체 심사·확인 업체에서 제외된 건설사\*의 시공 현장
- ③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불량 시공현장(지자체 통보)
-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불량 시공현장(공단 통보)
- ⑤ 그 밖에 지방관서나 본부에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공현장



## □ 일요일·공휴일 시공현장 감독

### ○ (대 상)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민간발주\*건설공사

\* 공공공사의 경우,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이 법으로 제한됨(건설기술진흥법)

- 작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일요일·공휴일 위험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불시감독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

- 위험작업 시에는 자율적으로 지청에 사전 작업계획서 제출(위험작업시 미제출 우선선정)

\* ①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 설치·조립·해체, ② 굴착기·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사용작업,  
③ 굴착작업(깊이 2미터 이상), ④ 건물 등의 해체 작업 등



#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위험성평가와 TBM에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